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4. 2.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경제지원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경제지원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농업 분야의 다양화에 발 맞추어 도시농업 관련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스마트농장의 조성 및 운영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도시농업 정의를 (현행) 도시텃밭에서 (개정) 도시농업으로 조례 내용 전반에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도시농업, 도시농업인 및 스마트농장)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장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교육·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장의 조성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 12. 1일부터 12.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4. 1. 26.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도시농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스마트농장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4017
----------	----------

제출년월일: 2024. 2. 2.

제출자: 달서구청장

(경제지원과장)

## 1. 제안이유

- 도시농업 분야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도시농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스마트 농장 조성 후 전문적인 운영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현 행)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 (개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도시농업 정의를 조례 내용 전반에 반영하여 용어 변경(안 전반)

- (현행) 도시텃밭 → (개정안) 도시농업

### 다. 도시농업, 도시농업인 및 스마트 농장 정의 신설(안 제2조 1,2,5호)

### 라. 스마트 농장 운영 및 관련 교육·체험활동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5호, 제5조)

##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3. 12. 1.~12. 21.)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농업” 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 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스마트농장” 이란 작물재배 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중 “도시텃밭 활성화에 관한” 을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농업인·도시농업 공동체·스마트농장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도시텃밭·상자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텃밭 활성화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스마트농장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교육·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농장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장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도시텃밭” 을 “도시농업” 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텃밭” 을 “도시농업” 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을 “도시농업 관련”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농장 육성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장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중 “친환경농법의 도시텃밭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을 “도시 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법의 도시텃밭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녹색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lt;신 설&gt;</u></p>	<p><u>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u></p> <p><u>-----.</u></p> <p>1. “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5. “스마트농장”이란 작물재배 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p>
<p><u>&lt;신 설&gt;</u></p> <p>1. • 2. (생략)</p> <p><u>&lt;신 설&gt;</u></p>	

### 3. · 4.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텃밭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도시텃밭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민은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도시텃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있는 농장을 말한다.

### 6. · 7.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  
-----.

제4조(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농업인·도시농업 공동체·스마트농장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도시텃밭·상자텃밭의 조성 및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텃밭 활성화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스마트농장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교육·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

제5조(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텃밭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도시텃밭·상자텃밭의 조성 및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텃밭 활성화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추진) 구청장은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텃밭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먹을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농장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장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동추진) ----- 도시농업 -----  
-----  
-----  
-----.

제8조(교육) ① -----  
-----  
----- 도시농업 -----  
----- 도시 -----

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친환경 농법의 도시텃밭 사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농업 관련 -----  
-----.

② 구청장은 스마트농장 육성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장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 도시 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  
-----  
-----.

<삭 제>

## 【 관 계 법 령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 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 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 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 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 ·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 · 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 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도시농업과 스마트농장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할 새로운 시설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비용발생 요인

- 스마트농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성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

## 3. 관련조문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2024년 6월부터 추진할 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
- 나. 추계의 결과: 1,105,070천원(연평균 221,014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구비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 6. 작성자: 기획경제국 경제지원과장 성 정 화

( 뒷쪽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비 고
세 입	150,000	230,000	235,750	241,640	247,680	1,105,070	
사업장 생산수입	9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770,000	
체험 프로그램 수입	5,250	9,000	9,000	9,000	9,000	41,250	
지방세	46,750	53,000	58,750	64,640	70,680	293,820	
세 출	150,000	230,000	235,750	241,640	247,680	1,105,070	
달서 상인스마트팜 운영비 등	150,000	230,000	235,750	241,640	247,680	1,105,070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5%) 반영
재원 조달	150,000	230,000	235,750	241,640	247,680	1,105,070	
소계	150,000	230,000	235,750	241,640	247,680	1,105,070	
구비	46,750	53,000	58,750	64,640	70,680	293,820	
수익금	103,250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11,250	